

경인AI디지털교육자격협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경인AI디지털교육자격협회라 한다. 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.

제2조 (소속 및 성격)

① 본 협회는 우리함께평생교육·나눔센터의 자격관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우리함께평생교육·나눔센터는 사단법인 예수교장로회 경인교회 부설 경인장애인선교회 산하 부설 교육·나눔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본 협회는 민간자격의 교육, 검정, 자격증 발급, 자격관리 및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·자격관리 단체이다.

제3조 (목적)

본 협회는 디지털 소외계층, 고령층, 장애인,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의 AI·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자격 교육과정, 자격검정, 강사양성, 보수교육, 자격관리 및 공익적 교육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무소)

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, 213호에 둔다.

제5조 (홈페이지 및 연락처)

① 본 협회의 홈페이지는 **www.a365.or.kr**로 한다.

② 본 협회의 전자우편은 admin@a365.or.kr로 한다.

③ 연락처는 별도 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에 따른다.

제6조 (사업구역)

본 협회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한다. 다만,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교육, 재능기부,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2장 사업

제7조 (사업의 종류)

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민간자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

민간자격 검정 시행 및 평가관리 사업

민간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득자 관리 사업

자격취득자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 사업

AI 디지털 교육, 챗봇 활용 교육, 스마트폰·컴퓨터·인터넷 활용 교육 사업

디지털생활AI교육지도사 교육 및 자격관리 사업

챗봇활용교육지도사 교육 및 자격관리 사업

시니어AI디지털지도사 교육 및 자격관리 사업

강사양성, 교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사업

디지털 소외계층, 고령층,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 무상교육 사업

교육 콘텐츠, 교재, 영상, 온라인 강의 및 실습자료 개발 사업

자원봉사자, 재능기부자, 기능기부자 발굴 및 협력 사업
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복지기관, 평생교육기관, 교회, 비영리단체 등과의 교육협력 사업 홈페이지, 인터넷신문,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 밖에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

제8조 (무상교육 원칙)

- ① 본 협회는 디지털 소외계층, 고령층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.
- ②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AI 교육, 챗봇 교육, 스마트폰 교육, 키오스크 교육, 컴퓨터 기초교육, 디지털 안전교육, 문서작성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.
- ③ 교육비, 수수료 발급비 및 자격증 발급비는 대상자와 사업 성격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무상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후원금, 기부금, 보조금, 협력기관 지원금, 공모사업비, 재능기부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9조 (민간자격 운영 원칙)

- ① 본 협회가 운영하는 자격은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등록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본 협회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자격명, 등록번호, 자격의 종류, 자격관리기관, 총비용, 환불규정,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한다.
- ④ 자격검정, 합격기준, 자격증 발급, 보수교육, 자격취소, 환불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「자격관리·운영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10조 (교육장소)

- ① 본 협회는 자체 교육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평생교육기관, 복지관, 주민센터, 도서관, 학교시설, 종교단체, 비영리단체,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장소를 대관 또는 협약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교육대상자의 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임시교육장, 순회교육장, 현장교육장, 온라인교육장 또는 협력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 (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)

- ① 본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복지기관,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·등록·배치·관리할 수 있다.
- ② 본 협회는 강사, 전문가, 기술자, 예술인, 상담가, 법률·세무·행정 전문가 등으로부터 재능기부 또는 기능기부 협조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자원봉사자, 재능기부자, 기능기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식비, 재료비, 강사수당,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실비 지급 기준과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장 회원

제12조 (회원의 자격)

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교육, 자격관리, 봉사, 후원, 재능기부 또는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13조 (회원의 구분)
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
일반회원: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사람

교육회원: 본 협회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

자격회원: 본 협회의 자격과정 또는 자격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
강사회원: 본 협회의 교육 및 강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

후원회원: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 또는 기부하는 사람 또는 단체

자원봉사회원: 본 협회의 사업에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사람

특별회원: 운영위원회가 협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단체

제14조 (회원의 가입)

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원 가입은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제15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본 협회의 교육, 행사, 봉사, 자격관리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6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본 협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 준수

본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

자격관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

교육생, 응시자, 자격취득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

필요한 경우 회비 또는 참가비 납부

제1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, 명예훼손, 자격관리 방해, 부정행위, 개인정보 침해, 금전문제 등을 일으킨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4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

제18조 (임원)

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대표 1인

부대표 약간 명

운영위원 약간 명

감사 1인 이상

자문위원 약간 명

제19조 (대표)

① 대표는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본 협회의 대표는 김재완으로 한다. 단,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20조 (운영위원회)

① 본 협회의 공정한 운영과 자격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대표, 부대표, 운영위원, 감사,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정관 및 운영규정의 제정·변경

자격관리·운영규정의 제정·변경

자격 종목의 신설, 변경, 폐지
교육과정 및 검정기준의 변경
검정위원 위촉 및 평가관리
합격자 관리, 자격증 발급, 자격취소 및 보수교육
회원 가입, 탈퇴, 제명에 관한 사항
지부, 지회, 교육센터, 협력기관 설치 및 해지
예산, 결산, 후원금 및 기부금 관리
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1조 (감사)

- ①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표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22조 (자문위원)

본 협회는 교육, AI, 디지털, 법률, 세무, 회계, 행정, 사회복지, 장애인복지, 홍보,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5장 자격관리

제23조 (자격 종목)

본 협회가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디지털생활AI교육지도사

챗봇활용교육지도사

시니어AI디지털지도사

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

제24조 (자격관리·운영규정)

- ① 자격의 교육과정, 응시자격, 검정방법, 합격기준, 자격증 발급, 보수교육, 자격취소, 비용 및 환불기준은 별도의 「자격관리·운영규정」으로 정한다.
- ② 본 협회는 자격검정의 공정성, 투명성, 전문성,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5조 (표시 및 홍보 기준)

- ① 본 협회는 자격 홍보 시 자격명, 등록번호, 자격의 종류, 자격관리기관명, 총비용, 환불규정,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본 협회는 국가자격, 국가공인, 취업보장, 수익보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·과장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지부 및 협력기관

제26조 (지부 및 협력기관)

- ① 본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에 지부, 지회, 교육센터, 협력센터 또는 협력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② 지부 또는 협력기관은 본 협회의 무상교육 원칙, 자격관리의 공정성, 회계의 투명성,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지부 또는 협력기관의 설치, 승인, 운영범위, 명칭 사용, 교육과정 운영, 자격검정 협조, 회계관리, 평가, 해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부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로 정한다.
- ④ 지부 또는 협력기관은 본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협회 명칭, 자격명, 로고, 교육자료, 자격증 발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

제27조 (재정)

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회비

교육사업 지원금

검정 및 자격관리 관련 실비

후원금 및 기부금

보조금 및 공모사업비

재능기부, 물품후원, 장소후원

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입

제28조 (회계연도)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9조 (재정관리)

- ① 본 협회의 재정은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후원금, 기부금, 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수입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장부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관한다.

제30조 (비영리 운영 및 잔여재산)

- ① 본 협회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.
- ② 본 협회의 수입 또는 잔여재산은 임원 또는 회원 개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.
- ③ 본 협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, 공익단체 또는 상위 소속기관에 귀속하거나 기부한다.

제8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

제31조 (개인정보 보호)

- ① 본 협회는 교육생, 응시자, 자격취득자, 회원 및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.
- ②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고,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한다.
- ③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한다.

제32조 (기록관리)

본 협회는 교육생 명부, 응시원서, 출석부, 평가결과, 합격자 명부, 자격증 발급대장, 환불 및 민원 처리 기록, 검정위원 위촉 및 평가 관련 자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제33조 (정관변경)
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.

제34조 (운영규정)

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, 자격관리, 지부운영, 기부금 관리, 실비 지급,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35조 (준용규정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자격기본법」, 관계 법령, 민간자격 운영 기준, 비영리 교육기관의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자격관리·운영규정과과의 관계)

본 협회의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「민간자격 자격관리·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제3조 (초대 대표)

본 협회의 초대 대표는 김재완으로 한다.

2026년 월 일

경인AI디지털교육자격협회

대표자 : 김재완 (서명 또는 인)